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6 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정춘숙・유동수・우원식

정정순・김성주・전재수

최종윤 · 김민기 · 강훈식

이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얼마전 "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"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"e아동행복지원스시템"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-지자체-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.

현재 보건복지부의 "e아동행복지원스시템"은 지자체 읍·면·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·면·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시 경찰·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, 드림스타트 사업 등 관련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.

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및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 지사 및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,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 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-지자체-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.

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,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자 함(안 제12조제4항). 법률 제 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"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의 장"을 "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 치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·광 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	제12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4
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	
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	
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	보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ㆍ
있으며,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	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
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	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할
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	수 있으며, 보장기관의 장 또는
인 · 단체 · 시설의 장이 이를	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</u>
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	도・특별자치도의 교육감
있다.	